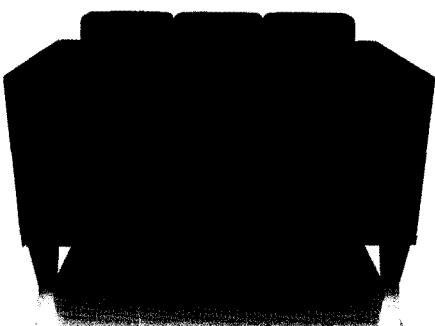


새집증후군 줄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지속 관리한다.

현행 안전기준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안전·품질표시기준 개정고시

“가구의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계속 시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구의 안전품질 표시기준을 지난 3월 28일에 개정고시 하였다.”



가구는 제조 공정에서 목재 등의 방부 처리 및 접착,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품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품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였다.

가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을 각각 병행 적용하여 양 기준 중 하나

를 충족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중소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향후 품알데하이드만 측정할 수 있는 데시케이터법과는 달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챔버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된 유해물질 시험방법 및 기준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문의 :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02-509-7246)